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5월 30일
2. 회부일자 : 2025년 8월 25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국회(임사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8. 25.)

-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상정,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보고
- 감사원의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
- 검토보고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2차 전체회의(2025. 8. 26.)

-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제3차 전체회의(2025. 8. 27.)

- 부별심사(경제부처)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전체회의(2025. 9. 1.)

- 부별심사(비경제부처)
- 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3.)

- 상정,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4.)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제3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5.)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27.)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계속)
- 원안의결

□ 제9차 전체회의(2025. 11. 27.)

-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
- 원안의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 윤 철)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씬 없이 달려 왔음.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마주하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다행히 최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024년 2분기 이후 지속된 부진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경제는 지금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

이를 위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정책에 AI,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초혁

신 경제로의 전환을 담아 이를 구현해 나가고자 함.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저성과 부문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여 그 여력을 성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음.

- 아울러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음.

또한 미래 핵심전략 산업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통하여 추격경제에서 선도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겨 경제성장과 함께 세수 기반이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것임.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부문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임.

총세입 규모는 535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50조 원보다 14조 100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음.

총세출 규모는 529조 5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54조 원 중 95.6%가 집행되었음.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6조 5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세출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 발생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4458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기금 출연 및 채무 상환 등에 활용하였음.

□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임.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8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08조 5000억 원임.

□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임.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음.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임.

□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임.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임.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조 2000억 원 증가한 2585조 7000억 원임.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8000억 원 증가한 632조 7000억 원임.

예비비는 민생 안정과 국민 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해 예산 4조 2000억 원 중 1조 6000억 원이 지출되었음.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음.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요지

(보고자 : 감사원장 최 재 해)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음.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35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2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4조 5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원임.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1008조 5000억원임.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6조 7000억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임.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취득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 총 2조 9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미래 지출예상액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등 총 1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3218조 4000억 원, 부채는 2585조 7000억 원이었음.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2조 3829억 원이 과소 계상, 물품은 16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음.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44조 5000억 원, 물품은 16조 5000억 원이었음.

2024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141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도 1092조 5000억 원에 비해 48조 7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8%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음. 그 밖에 국가채권은 576조 7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1조 원이었음.

□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임.

기획재정부 등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지표의 실적치를 계획서와 다르게 측정한 사례 등 총 15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

였음.

□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임.

감사원은 2024회계연도에 136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74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음.

지난 2024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에 대한 감사 등 20개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음.

IV.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보고의 요지

(보고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구 윤 철)

-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으로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게 처분을 요구한 144건 중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88.9%에 해당하는 128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1.1%인 16건은 조치 중임.

조치 중인 16건을 내용별로 보면 변상판정이 1건이고 징계요구가 14건이며 시정요구가 1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음.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4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V.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정 대 영)

※ 【붙 임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

VI.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II.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심사보고자 : 박 형 수 위원)

1. 심사경과

-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 심사보고 요지

-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음.

□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VIII. 토론요지

생 략

IX. 심사결과

원안의결

※ 【붙 임 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총괄표 참고

X. 시정요구(안) 및 부대의견(안)

1. 시정요구(안)

【붙임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안)

2. 부대의견(안) : 총 0건

※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16건 제외

【붙임 1】



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요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I . 2024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주요 재정 지표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수입은 594.5조원으로 예산 612.2조원 대비 17.7조원(△2.9%)미달되었으나 전년 대비 20.5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지출은 638.0조원으로 예산 656.6조원 대비 18.6조원(△2.8%) 미달되었고, 전년 대비 27.3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약자복지 등 복지지출 증가로 총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세(금) 감액조정 등으로 예산 대비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수입 및 총지출 결산]

(단위 : 조원)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대비 (C-B)	
I. 총수입 ¹⁾	573.9	612.2	594.5	△17.7	20.5
1. 국 세	344.1	367.3	336.5	△30.8	△7.5
2. 세외수입	28.5	28.2	29.6	1.4	1.1
3. 기 금	201.1	216.7	228.2	11.5	27.1
※ 세입예산외 ²⁾	0.3	-	0.1	0.1	△0.1
II. 총지출 ¹⁾	610.7	656.6	638.0	△18.6	27.3
1. 일반회계	343.5	356.5	344.5	△12.0	1.0
2. 특별회계	69.6	81.7	78.6	△3.2	8.9
3. 기 금	196.5	218.4	214.5	△3.9	18.0
※ 세출예산외 ³⁾	1.0	-	0.4	0.4	△0.6

주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도 제외됨

2)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3)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43.5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1.7\%$)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0.9조원 개선되었고, 전년 대비 6.8조원 악화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104.8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4.1\%$)로, 적자 규모는 예산 대비 13.1조원, 전년 대비 17.7조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I.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36.8$ ($\Delta 1.5$)	$\Delta 44.4$ ($\Delta 1.8$)	$\Delta 43.5$ ($\Delta 1.7$)	0.9 (0.1)	$\Delta 6.8$ ($\Delta 0.2$)
II. 사회보장성기금수지 (GDP 대비)	50.3 (2.1)	47.2 (1.9)	61.2 (2.4)	14.0 (0.5)	11.0 (0.3)
III.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87.0$ ($\Delta 3.6$)	$\Delta 91.6$ ($\Delta 3.6$)	$\Delta 104.8$ ($\Delta 4.1$)	$\Delta 13.1$ ($\Delta 0.5$)	$\Delta 17.7$ ($\Delta 0.5$)

자료: 기획재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1,175.2조원으로 GDP 대비 46.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기준 전망치보다 20.5조원 감소한 것이나, 전년 대비로는 48.5조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권(1,047.9조원)가 전년 대비 49.9조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 (A+B, 잠정) (GDP 대비, %)	1,126.8 (46.8)	1,195.8 (47.4)	1,175.2 (46.0)	△20.5 (△1.5)	48.5 (△0.8)
○ 중앙정부 채무(A)	1,092.5	1,163.0	1,141.2	△21.9	48.6
■ 국 채	1,091.1	1,161.7	1,139.8	△21.9	48.7
- 국고채권	998.0	1,046.0	1,047.9	1.9	49.9
- 국민주택채권	81.6	83.7	79.1	△4.6	△2.5
- 외평채권(외화)	11.5	32.0	12.8	△19.2	1.3
■ 차입금	1.2	1.2	1.2	0.0	-
■ 국고채무부담행위	0.2	0.2	0.2	△0.0	△0.0
○ 지방정부 순채무(B)	34.3	32.8	34.1	1.3	△0.2

주 1) GDP 대비 채무비율은 산출시기 마다 GDP 전망치가 달라 변동이 있음

2) 지방정부순채무는 잠정치(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대응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가 815.4조원,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 359.8조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중 6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예산 대비 23.1조원, 전년 대비 88.9조원 각각 증가하였는데, 적자성 채무의 대부분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채무이며, 이는 756.7조원으로 전년 대비 96.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성 채무는 예산 대비 43.7조원, 전년 대비 40.5조원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예산 대비 43.7조원, 전년 대비 40.7조원 각각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가채무의 성질별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2023 결 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 산 (B)	결 산 (C)	예산 대비 (C-B)	
□ 국가채무(A+B)	1,126.8	1,195.8	1,175.2	△20.5	48.5
○ 적자성 채무(A)	726.4	792.3	815.4	23.1	88.9
(구성비)	(64.5)	(66.3)	(69.4)	(3.1)	(4.9)
- 일반회계적자보전	660.1	733.3	756.7	23.4	96.6
- 공적자금국채전환 등	66.4	58.9	58.7	△0.3	△7.7
○ 금융성 채무(B)	400.3	403.5	359.8	△43.7	△40.5
(구성비)	(35.5)	(33.7)	(30.6)	(△3.1)	(△4.9)
- 외환시장 안정	251.0	253.4	210.3	△43.1	△40.7
- 서민주거 안정 등	149.4	150.1	149.5	△0.6	0.2

자료: 기획재정부

2.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535.9조원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4.1조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437.3조원으로 전년 대비 29.4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2.2조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은 98.6조원으로 전년 대비 9.6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 대비 1.9조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합 계	497.0	550.0	535.9	△14.1	39.0
일반회계	407.9	449.5	437.3	△12.2	29.4
특별회계	89.0	100.5	98.6	△1.9	9.6

자료: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의 성질별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336.5조원으로 전년 대비 7.6조원 감소하고 예산 대비 30.8조원 미달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9.4조원으로 전년 대비 46.5조원 증가하고, 예산 대비 16.7조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성질별 세입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국세수입					세외수입				
	2023 결산 (A)	2024				2023 결산	2024			
		예산 (B)	결산 (C)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예산 대비 (C-B)	전년 대비 (C-A)
합 계	344.1	367.3	336.5	△30.8	△7.6	152.9	182.7	199.4	16.7	46.5
일반회계	333.9	356.1	326.2	△29.9	△7.7	74.0	93.4	111.1	17.7	37.1
특별회계	10.1	11.2	10.4	△0.8	0.3	78.9	89.3	88.3	△1	9.4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출은 529.5조원으로 전년 대비 39.0조원 증가한 반면,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24.5조원 적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총세출은 435.4조원으로 전년 대비 29.5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16.1조원 적었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은 94.0조원으로 전년 대비 9.5조원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보다 8.4조원 적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회계별 세출 결산]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전년 대비 (C-A)
		예산액	예산현액 (B)	결산 (C)	예산현액 대비(C-B)	
합 계	490.4	550.0	554.0	529.5	△24.5	39.0
일반회계	405.9	449.5	451.6	435.4	△16.1	29.5
특별회계	84.5	100.5	102.4	94.0	△8.4	9.5

주) 예산현액(B)은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및 초과지출 승인액 등을 합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총세입 535.9조원 - 총세출 529.5조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0조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조원)

구 분	총세입 결산 (A)	총세출 결산 (B)	결산상잉여금 (A-B)	이월액 (C)	세계잉여금 (A-B-C)
합 계	535.9	529.5	6.5	4.5	2.0
일반회계	437.3	435.4	1.9	1.4	0.4
특별회계	98.6	94.0	4.6	3.0	1.6

자료: 기획재정부

3.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68개 기금의 전체 수입·지출액은 1,008.5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8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의 구성내역을 보면, 여유자금회수(293.5조원), 정부내부수입(290.5조원), 자체수입(242.5조원), 차입금(182.1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고, 차입금(△1.5조원)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정부내부지출(337.4조원), 여유자금운용(299.6조원), 사업비(193.5조원), 차입금원금상환(143.6조원), 차입금이자상환(31.5조원), 기금운영비(2.9조원) 순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 결산 (A)	2024			수정계획 대비 (D-C)	전년 대비 (D-A)
			계획		결산 (D)		
			당초(B)	수정(C)			
수 입	자체수입	214.3	231.8	231.9	242.5	10.5	28.1
	정부내부수입	248.1	309.8	312.5	290.5	△22.0	42.4
	차입금	183.5	198.7	198.9	182.1	△16.9	△1.5
	여유자금회수	243.8	283.1	287.0	293.5	6.5	49.7
합 계		889.8	1023.3	1030.4	1008.5	△21.8	118.8
지 출	사업비	178.7	198.9	202.6	193.5	△9.0	14.9
	기금운영비	2.9	3.0	3.0	2.9	△0.1	-
	정부내부지출	268.9	332.6	342.7	337.4	△5.3	68.5
	차입금원금상환	139.0	143.3	144.7	143.6	△1.2	4.6
	차입금이자상환	26.9	31.9	32.2	31.5	△0.7	4.6
	여유자금운용	273.4	313.5	305.2	299.6	△5.6	26.2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298조 1,0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 2,468억원 증가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계정성 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519조 8,166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 2,71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31조 1,9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1억원 증가하였고, 사업성기금의 수입·지출 규모는 159조 4,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6,88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보험성기금은 수정계획 대비 결산 규모가 38조 7,394억원 초과된 반면, 계정성기금은 34조 7,977억원, 금융성기금은 2조 3,562억원, 사업성기금은 23조 4,152억원 각각 미달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 유형별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3 실적 (A)	2024				전년 대비 (D-A)
		계 획		결산 (D)	수정계획 대비 (D-C)	
		당초(B)	수정(C)			
합 계	8,897,582	10,232,932	10,303,614	10,085,316	△218,299	1,187,734
■ 사회보험성기금(6개)	2,688,556	2,592,394	2,593,631	2,981,025	387,394	292,468
■ 계정성기금(5개)	4,405,447	5,485,652	5,546,144	5,198,166	△347,977	792,719
■ 금융성기금(8개)	306,274	326,108	335,498	311,935	△23,562	5,661
■ 사업성기금(49개)	1,497,304	1,828,779	1,828,342	1,594,189	△234,152	96,885

자료: 기획재정부

Ⅱ.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검토

1. 2024년 재정운용의 경제적 성과

1-1. 성장 측면

2024년 세계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내수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세계경제는 세계 교역의 확대 등으로 코로나 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당초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2.9%)를 상회하는 3.3%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물가 안정과 반도체·수출 증가를 바탕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내수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 대비 실적]

구분	2024년도 전망치(목표치)		2024년도 실적치(B)	차이(B-A)
	당초(2024.1)	수정(2024.7)(A)		
○ 실질GDP 성장률(%)	2.2	2.6	2.0	△0.6
- 민간소비(%)	1.8	1.8	1.1	△0.7
- 설비투자(%)	3.0	2.0	1.7	△0.3
- 건설투자(%)	△1.2	△1.2	△3.3	△2.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7	2.5	1.2	△1.3
○ 경상수지(억달러)	500	630	990	360
- 수출(통관, 전년비 %)	8.5	9.0	8.2	△0.8
- 수입(통관, 전년비 %)	4.0	2.0	△1.6	3.6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1.4.),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4.7.3.)

이와 더불어 과거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이 견인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정체 되면서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경제성장을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국내총생산 부문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는 매년 0.5%p 이상의 기여도를 유지하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낮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5%p 수준으로 정체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성장기여도 하락이 실질 경제성장을 둔화로 직결되는 양상이 이어졌습니다.

[2015~2024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단위: %, %p)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2.9	3.2	3.4	3.2	2.3	△0.7	4.6	2.7	1.6	2
민간	2.2	2.3	2.8	2.4	0.8	△1.8	4	2.3	1	1.5
정부	0.8	0.9	0.7	0.8	1.5	1.0	0.7	0.5	0.5	0.5

주 1)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실질경제성장률을, 민간과 정부는 각각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의미

2) 단수조정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합계가 경제성장률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특히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면, 재정지출의 규모와 정부의 성장기여도 사이에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위해 재정 규모 외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총지출을 보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높았던 2019년 (1.5%p)과 2020년(1.0%p)에는 총지출이 전년 대비 각각 11.7%, 13.4% 증가했으나,

2021년(9.3%), 2022년(13.5%)은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장기여도는 0.7%p, 0.5%p에 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 성장기여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정부는 최근 성장기여도 하락 및 정체의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2024년 총지출변동 현황(결산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지출(조원)	372.0	384.9	406.6	434.1	485.1	549.9	601.0	682.4	610.7	638.0
전년대비 증감률(%)	6.9	3.5	5.6	6.8	11.7	13.4	9.3	13.5	△10.6	4.4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한편 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 하였으나, 2024년과 같은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서는 오히려 경기변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재정의 신속집행 시행 여부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재정의 집행률과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있으므로,¹⁾ 재정의 신속집행이 실제 경기부진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따르더라도 당해년도의 경기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될 때에는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상고하저의

1)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신속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2025.2.) 연구용역에 따르면, 집행률 1%p 상승할 때 당기 GDP 성장률이 0.272%p 상승하는 유의미한 단기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시차 효과를 통해 신속집행에 따른 상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기 승수효과는 불확실함.

경기흐름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신속집행이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은 상반기 2.2%, 하반기 2.0%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아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예상되었고, 실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8%, 하반기 1.3%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큰 경기변동을 보였습니다.

[2024년 상·하반기 예상 및 실제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구 분	예상			실제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2	2.0	2.1	2.8	1.3	2.0

주: 예상 GDP성장률은 2023년 11월 한국은행 경제전망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3.11.) 및 「경제전망보고서」(2025.2.)를 재작성

2024년 정부는 상고하저의 경기변동이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 민생경제 부진 완화를 위해 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신속집행이 하반기에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고용 측면

코로나19 이후 주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고용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명 증가한 2,857만 6,000명으로, 당초 전망치인 23만명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62.7%를 기록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69.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2024년 주요 고용지표]

(단위: 천명, %, %p)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인구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경제활동인구	28,012	28,310	28,922	29,203	29,399
취업자수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년 대비 증감	△218	369	816	327	160
실업자수	1,108	1,037	833	787	823
비경제활동인구	16,773	16,770	16,339	16,204	16,172
경제활동참가율	62.5	62.8	63.9	64.3	64.5
고용률	60.1	60.5	62.1	62.6	62.7
전년 대비 증감	△0.8	0.4	1.6	0.5	0.1
15~64세 고용률	65.9	66.5	68.5	69.2	69.5
실업률	4.0	3.7	2.9	2.7	2.8
전년 대비 증감	0.2	△0.3	△0.8	△0.2	0.1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제작성

다만 연령계층별 취업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15세~29세, 30세~39세, 40~49세가 모두 2020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만 2020년 18.9%에서 2024년 22.7%로 상승하였습니다.

[2020~2024년 연령계층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15세~29세	3,763	3,877	3,996	3,899	3,755
비중	14.0	14.2	14.2	13.7	13.1
30~39세	5,364	5,257	5,303	5,357	5,447
비중	19.9	19.3	18.9	18.9	19.1
40~49세	6,346	6,311	6,314	6,260	6,179
비중	23.6	23.1	22.5	22.0	21.6
50~59세	6,356	6,422	6,618	6,678	6,705
비중	23.6	23.5	23.6	23.5	23.5
60세 이상	5,076	5,406	5,858	6,223	6,489
비중	18.9	19.8	20.9	21.9	22.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2.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30.8%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의 비중도 2024년 67.6%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37.7시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2024년 전일제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취업자수(A)	26,904	27,273	28,089	28,416	28,576
전일제 근로자(주 36시간 이상)	20,112	20,078	19,578	21,195	19,319
비중	74.8	73.6	69.7	74.6	67.6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5,956	6,706	8,028	6,795	8,810
비중	22.1	24.6	28.6	23.9	30.8
일시휴직	837	490	483	426	446
비중	3.1	1.8	1.7	1.5	1.6
주당 평균 취업시간(B)	39.0	38.9	38.3	38.9	37.7

자료: 통계청, 「2025년 6월 고용동향: 첨부파일 통계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실시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11만 7,000명(5.0%)이 증가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15~29세 및 30~39세의 증가율이 각각 5.2%, 10.8%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2022~2024년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단위: 천명, %, 전년대비)

	2022			2023			2024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구성비	증감	증감률
15~29세	390	17.1	△29	401	17.0	11	421	17.1	21	5.2
15~19세	28	1.2	3	29	1.3	2	33	1.3	3	10.9
20~29세	362	15.9	△31	371	15.8	9	389	15.8	18	4.7
30~39세	260	11.4	△22	273	11.6	13	302	12.2	29	10.8
40~49세	263	11.6	△11	265	11.3	1	277	11.2	12	4.5
50~59세	386	16.9	△29	376	16.0	△10	390	15.8	14	3.6
60세 이상	978	43.0	△30	1,037	44.1	59	1,077	43.7	41	3.9
70세 이상	-	-	-	176	7.5	-	174	7.0	△2	△1.1
전체	2,277	100.0	△121	2,351	100.0	74	2,467	100.0	117	5.0

자료: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청년층에서 아예 구직의사를 상실하고 고용 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고용정책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²⁾

이에 정부가 2023년 11월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단계별(재학 → 재직 → 구직)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2025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의 원 주된 이유는 ① 구직 의욕 부족(38.1%), ② 교육 및 자기계발(35.0%), ③ 재충전 필요성(27.7%), ④ 심리적인 문제(25.0%) 순으로 나타났다.

2. 재정수입: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2024년에도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입결손(30.8조원)이 발생되었고, 2025년 제2회 추경에서도 10.3조원의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연례적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 국세수입은 336.5조원이 수납되어 예산(367.3조원) 대비 30.8조원(△8.4%)의 결손이 발생되었고, 2025년에도 세수 부족 전망에 따라 제2회 추경에서 10.3조원 규모의 감액 세입경정을 실시하는 등 세수 오차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도 국세외수입은 257.8조원이 수납되어 예산(244.9조원) 대비 12.9조원(5.9%)이 증가되었고, 전년 결산(229.6조원) 대비 28.2조원(12.3%) 증가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 (A)	결산 (B)	본예산 대비 (B-A)	예산(C)	결산 (D)	예산 대비 (D-C)	전년 대비 (D-B)
총수입	625.7	573.9	△51.8	612.2	594.5	△17.7	20.5
1. 국세수입	400.5	344.1	△56.4	367.3	336.5	△30.8	△7.5
2. 국세외수입	225.2	229.6	4.4	244.9	257.8	12.9	28.2
- 예산수입	25.0	28.5	3.5	28.2	29.6	1.4	1.1
- 기금수입	200.3	201.1	0.8	216.7	228.2	11.5	27.1
3. 세입세출외	-	0.3	0.3	-	0.1	0.1	△0.1

주) 세입세출외는 국고금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자료: 기획재정부

2-1.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국세수입의 경우, 2021년 이후 4년간의 오차(201.1조원)가 최근 10년간 오차 규모(280.4조원)의 71.7%에 달하는 등 세수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급격한 변동 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의 적정성 재검토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도별 세수오차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61.4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 2022년 52.5조원, 2024년 △30.8조원 순입니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021년 21.7%, 다음으로는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2024회계연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2	19.7	23.1	25.5	△1.3	△6.5	61.4	52.5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9	14.3	25.5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편성의 전제가 된 경제성장률(2.4%) 및 민간 소비증가율(2.2%) 전망치가 실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영업실적·부동산거래량 및 수입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세·양도소득세 및 관세 등의 세수결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1회계연도 세수추계 오차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계모형 개선·전문가 참여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을 포함한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수입 오차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수추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국세외수입도 절대값 기준으로 오차규모가 38.8조원, 오차율은 22.8%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을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수납(+)과 과소수납(-)을 상계하지 않고 합한 절대값 기준으로 국세외수입의 오차를 계산할 경우, 2021년에는 43.4조원(30.8%)으로 가장 큰 오차 규모 및 오차율을 보였으며, 2024년의 경우 오차규모는 38.8조원, 오차율은 22.8%입니다.

[2021~2024년 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오차를 절대값으로 계산 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A)	140,881,945	152,183,177	151,781,684	169,880,366
수납액(B)	168,637,314	164,589,344	166,364,497	185,671,678
오차(B-A)	43,446,886	35,714,749	39,710,563	38,798,330
오차율(C/A)	30.8	23.5	26.2	22.8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수납액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거나 최근 3년간 수납액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향후 정부는 국세외수입 예산안 편성 시 기계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정부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4.3조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회가 요구한 2023회계년도 결산 시정사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29.6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 10월 「20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해당 부족액을 ㉠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활용(14~16조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6.5조원), ㉢ 통상적 불용(7~9조원)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2.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3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도 세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8.2조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국세수입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불용 조치는 세수결손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는 국회에서 확정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정부가 미교부할 경우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고, 이에 대한 각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의 수용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활한 외국환거래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세수결손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방안 중 하나로 외국환평형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4조원 축소하였으나, 이는 원활한 외국환거래 지원이라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조세지출 정비

2년 연속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국세 수입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국회와 함께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2025년 국세감면율 추이를 보면, 2023년 실적은 15.8%로 법정한도 14.3%를 1.5%p 초과하였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법정한도 대비 각각 1.7%p, 0.7%p 초과하여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³⁾

2018년 대비 2024년 조세지출 증가율은 62.5%에 이르는 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24.1%에 그쳐 국세감면율은 2018년 13.0%에서 2024년 16.3%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조세지출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통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2021~202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로 도출되나, 2023년 국세감면율이 2024년 8월에 확정됨에 따라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확정치도 8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3. 재정지출: 4대 중점투자 분야 분석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민생안정 · 경제활력 · 국민안전 · 미래대비**라는 목표 하에 4대 중점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4대 중점투자 분야로 ①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②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 ③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분야가 설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 및 20대 핵심과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 · 도전적 R&D로 전환 ■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 어린이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으로 극복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 · 수출지원 ■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군 주거 · 병영여건 개선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 ■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도 예산안」, 2023.8.

3-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정부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기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사전제도 설계 미흡, 현장 수용성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과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유사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차별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역시 정책자금의 활용성과 접근성이 낮아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신속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채권매입 실적으로 인하여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시험장 선점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절차를 설계하고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정부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준비’를 위해 혁신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추진 하였으나, 사전 준비 부족과 미흡한 사업관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적이 부진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사례가 일부 나타났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024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사전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25년 하반기에야 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마치기 전 예산이 미리 편성되었으나,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 규모가 축소 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은 일부 지원대상의 융자금 사용 용도가 원전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이 증액되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어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민간 중심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펀드 결성 지연에 따른 투자 미흡, 수요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해 당초 기대한 정책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콘텐츠 전략펀드’는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2024년도 출자 자금이 민간에 적시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투자기간 내 자펀드 결성이 지체되면서 대규모 재정이 사실상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 자펀드 결성시한 준수 및 투자 집행 촉진을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지연과 사업 기간 혼선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정산이 지연되고, 일부 서비스 수행기관은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이양은퇴직불·은퇴직불형농지연금’ 등 고령농 지원 사업은 수요 예측 실패로 집행률이 저조한 가운데 실제 수요자(고령농)의 영농 지속의사에 대한 정밀한 사전 조사가 병행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정부는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ODA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재난안전사업에서 사전협의 없는 예산 편성 및 이연 집행 등이 나타났고, 급격한 ODA 예산 증액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과 재원 배분의 합리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일부 재난안전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계획 부실 및 성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정부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이 사전협의를 거쳐 편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복구 재원을 차년도 본예산을 활용하여 이연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고 예비비 등의 사용을 통해 재난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2024년도 ODA 예산은 당초 수립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30년 목표치로 제시한 수준에 도달하였는 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급격하게 ODA 예산을 증액한 것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정지출: 재정 정상화(지출구조조정) 관련 분석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중점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R&D)과 보조금 예산을 중점 정비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23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R&D)과 보조금 예산을 중점 정비분야로 지정 하면서, 관행적 R&D 지원에서 탈피해 성과창출형 도전적 R&D 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1.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의 대상 사업 및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지출구조조정이 지출효율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세부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상 사업명 및 사업별 조정 규모 등의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효율화 노력은 재정 운용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출구조

조정이 지출효율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실시내역을 보면, SOC 등 시설 구축사업과 ODA 사업 등의 경우에는 총사업비나 전체 사업 규모의 감축 없이 예산의 지출 시기만 연기하는 사업이 상당수 존재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인 지출효율화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후 사업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4-2. 국가연구개발(R&D) 예산 감액 편성

정부는 2023년 3월 수립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고 R&D 전체 예산 및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예산을 2024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수립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2023년 3월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서 그간의 투자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면서 5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동 전략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의 R&D 분야 예산 투자액은 32.0조원(예상 총지출 669.7조원 기준)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불과 5개월 후인 2023년 8월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결과에서 R&D 예산을 총지출의 3.9% 수준인 25.9조원으로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전년(4.7조원) 대비 6.3%를 증액한 5조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R&D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성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매년 10%씩 투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명시한 분야조차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R&D 사업은 법령상 규정된 성과나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 없이 예산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습니다.

R&D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다년간 단계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과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연구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및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 단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정부가 R&D 예산을 감액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평가 절차나 연구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체결하는 연구개발협약서⁴⁾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R&D 사업에 대해 달성가능성이나 중간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국비를 조정할 경우, 연구가 지연되거나 최종 성과가 축소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표준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서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됨.

4-3. 보조사업 재정비 검토

정부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중 유사중복·집행부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정비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의 관행적 증가와 더불어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미흡·부정수급 등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누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을 합리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국고보조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여전히 일부 사업에서 타 사업과 유사중복, 근거법령 미흡 또는 부실한 사업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인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경북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고 2024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이 전액 이·전용 감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중 국립예술단체(8개)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공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 미흡 및 사업 수요 오예측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으로, 국가유산청의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예산액 전액이 불용되었고,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배달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외식업소(5,000개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였으나 실제 지원대상 업소는 2,000개소에 불과하여 실효행률이 32.0%에 불과합니다.

Ⅲ. 주요 주제별·유형별 검토

1.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재정 내 편입 필요

저성장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제약된 재정 여건 하에서 국민 건강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나, 건보재정의 수입·지출이 적절한 외부 통제 없이 정부 일방 정책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타 4대 보험과 같이 건보재정의 기금화를 통한 국가재정 편입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발전 과정에서 급여항목 확대·보장성 강화 및 운영 체계 일원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제도의 보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은 국민의료 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약 100조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중 국고지원금(일반 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2024년 12.2조원)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 대부분이 국회 예산 심의·의결 없이 국가재정 외로 편성·집행되고 있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인 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국가재정 내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보험료율과 수가 등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고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지며 수가가 건보지출의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건보재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 통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 및 건강보험 수가 등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및 고시 등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보험료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정부의 판단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 수가의 경우 폐쇄적인 결정 체계로 인해 수가의 적정성·객관성 등에 대한 검증의 기회가 제한되고 수가 결정의 합리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결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민주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비상진료대책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공공정책,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지원금, 복지정책 성격의 시범사업 등 국민건강보험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별다른 통제 없이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지출에 대한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전국 단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3조 2,90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적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지만, 이번 의료공백 위기는 국가적인 정책 판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정책 갈등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비상재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지양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4년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성 재정지출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급여 중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건의료제도의 시행 필요성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건강실천생활지원금제 시범사업’ 등 신규 의료정책이 아닌 복지정책과 유사한 성격의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의 과소 추계와 더불어 총지출 규모에 혼선을 초래하므로, 기금화를 통해 국가재정으로 편입하여 통합재정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실제로는 보건복지 분야 재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전체 복지 지출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에 편입 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 변동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평가 및 국회의 심의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재정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공기관 결산 검토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총 331개로,⁵⁾ 2024회계년도 공공기관 전체 수입은 948.1조원, 전체 지출은 947.4조원 규모이고, 2024년 말 자산은 1,151.9조원, 부채는 741.5조원으로 부채비율은 180.6% 수준입니다.

2024년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비핵심자산을 조속히 매각하고 사업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의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던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2021년 9월에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서 설립되었고, 통합 전 광물자원공사는 5조 9,985억원의 투자실적 대비 8,090억원 회수에 그쳤고, 통합 후 2024년까지도 총 투자실적 7조 3,387억원 대비 1조 4,514억원만이 회수된 상황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2014~2024년 투자한 해외광구 대상 총 투입비용 대비 회수대금을 살펴보면, 총 51개 해외광구를 대상으로 240억 3,99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나 128억 9,08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은 2020년 △1.2조원에서 2024년 △2.0조원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감가상각 및 손상차손 누계액 증가 등 영향으로 유형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31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로교통공단 등 준정부기관이 57개,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기타공공기관이 243개임.

둘째,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보전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의 사업 계획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높은 부채비율에 더해 새출발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캠프채 발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 출연금을 통한 현금 출자 이외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규모화 사업 및 청년농 정책 등이 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노사협의 등을 이유로 운영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게 대한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제도 하에서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부 상한(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초과한 대출 인원이 전체 대출 인원의 5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대부 초과금액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일부 공공기관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시행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광고를 자체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차입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동시에 외부차입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투자지원(펀드) 사업 검토

2024년도 정책금융 사업 중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14개 부처에서 예산현액 1조 9,429억 9,300만원 중 1조 9,405억 4,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습니다.

2024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출자(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등이 있으며, 2024년 투자지원(펀드)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태펀드 일부 투자 분야에서 정책 출자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자금의 마중물이라는 사업목적에 감안하여 민간 출자 비중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운용 중인 모태 출자펀드의 투자분야별 출자자 구성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경우 14개 계정의 15개 분야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 경우 2개 계정의 13개 분야에서 정책 출자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콘텐츠해외진출’, ‘농식품벤처’ 등 기대수익률이 낮아 정책출자 비중이 높아진 분야도 있으나, 수익성이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스케일업’ 등에서도 정책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는 펀드사업 추진 시 민간 출자 비중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둘째,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정책자금 출자 비율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가재정이 자펀드의 주목적에 투자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최소한 정책자금의 출자비율보다는 높게 설정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펀드는 주요 투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운용사의 수익보전과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을 위해 투자의무비율을 100%로 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펀드의 조성 및 운용목적 상 적어도 공공부문의 출자분은 해당 펀드의 투자목적 분야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에서 2024년 운용 중인 자펀드 중 정책자금 출자비율 보다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이 낮은 펀드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① 정책펀드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 중 일부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입되지 않을 수 있어 재정투입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 ② 민간자금 유치를 통해 주요 투자대상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펀드의 당초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민간자금이 주목적 투자대상 이외에 투자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부적정하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동일한 분야 내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운용사의 수익률 제고 유도 및 민간출자자의 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별 기준수익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분야별 기준수익률 현황을 보면, 주목적 투자대상 및 투자목적이 같은 하나의 분야 내에서 자펀드 간 기준수익률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기준수익률 설정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기준수익률은 펀드별로 조합원 간 협의를 통해 최소 기준수익률 이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스포츠출발 분야의 경우 자펀드 기준수익률이 2% 또는 7%로, 루키리그 분야의 경우 5%에서 8%로 설정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일부 정책펀드 사업은 자펀드 결성 및 투자가 지연되어 출자된 정책자금이 모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 및 조기 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인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현재 4개 지역의 프로젝트 펀드에서 자펀드 결성 기한을 아무런 제재 없이 연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펀드 투자기간(2년) 내 조속히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면제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어 투자실적이 여전히 부진하고 프로젝트 자펀드의 민간자금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정부는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투자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예측하여 투자가 실제 필요한 만큼만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모펀드 및 자펀드 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자펀드 결성 지연으로 연내 투자소진율이 부진하고 문화계정 내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하고 있는 금액(투자여력)이 상당하므로, 향후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빈집정비 사업 검토

현재 빈집 정비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 간 유사성, 법령상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F 방식의 한시적 협의 구조를 넘어, 명확한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및 정비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빈집 수 및 사업규모와 정비율(%) 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국 빈집은 13만 4,009호, 빈집정비사업규모는 8,986호로써 정비율(%)은 5.2%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5월 1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빈집정비를 위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빈집 정비 사업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며, 역할 분담이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례로 국토교통부는 9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빈집·폐시설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빈집 정비를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경관개선 사업도 전국의 빈집을 대상으로 하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빈집 정비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들도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 중복 등으로 집행 부진 및 정책효과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농촌유희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미매칭 및 행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정비된 빈집을 공공활용하여 타 사업과 연계하고자 계획하였다가 철거사업만 지원하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공활용의 범위가 부지활용으로 제한되고, 타 사업과의 연계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공활용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행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빈집 등의 정비사업 중 일부는 철거 또는 보수를 단순 지원하는 것이어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내용상 유사하면서도 상호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5.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검토

정부는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에 AI 기술을 단순히 적용하는 형태의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의 적용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과 연관된 세부사업⁶⁾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27개 부처에서 169개의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며, 2조 559억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조 160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1%)되고 191억 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6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각 부처 AI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	783,216	783,041	-	150	99.9
고용노동부	5	500,343	500,154	-	189	99.9
산업통상자원부	21	162,232	162,232	-	-	100.0
환경부	1	157,771	145,694	1,452	10,625	92.3
국토교통부	15	116,789	115,251	233	1,305	98.7
방위사업청	7	91,583	79,160	5,188	7,236	86.4
문화체육관광부	7	85,005	84,844	-	161	99.8
보건복지부	5	27,451	27,450	-	1	99.9
해양수산부	5	26,554	26,554	-	-	100.0
국회	2	25,208	13,104	12,000	104	52.0
교육부	2	22,012	22,012	-	-	100.0
중소벤처기업부	4	19,200	19,197	-	3	99.9
행정안전부	3	5,384	5,384	-	-	100.0
질병관리청	1	5,072	4,564	48	460	91.0

6)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AI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을 기준으로 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농촌진흥청	3	5,004	4,979	-	25	99.5
우주항공청	1	3,869	3,869	-	-	100.0
산림청	2	3,537	3,507	-	30	99.2
외교부	1	3,113	2,830	22	261	90.9
경찰청	1	2,813	2,813	-	-	100.0
통일부	1	1,877	1,872	-	5	99.7
해양경찰청	1	1,632	1,348	195	89	82.6
법제처	1	1,482	1,482	-	-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3	1,295	1,281	-	14	98.9
대통령경호처	2	1,000	1,000	-	-	100.0
통계청	3	915	898	-	17	98.1
방송통신위원회	2	850	850	-	-	100.0
대법원	2	712	712	-	-	100.0
합계	169	2,055,919	2,016,082	19,138	20,675	98.1

주) 위 자료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출한 AI 사업을 정리한 것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재구성

이와 같이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AI 사업 중에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시키는 사업도 있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와 같은 사업은 기존 사업에 AI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부처 실적 중심의 사업 편성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술 고도화 및 AI 산업 전반에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설정하고, 머신러닝·자연어처리·딥러닝·시계열 예측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역량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AI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수행된 일부 AI 사업은 사업 관리가 미흡하거나 결과물의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4년도 계획현액 425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태조사 결과 AI 솔루션을 구입한 기업 중 66.4%만 해당 AI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6.8%의 기업이 효과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초거대 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은 3월, 5월, 8월 총 3차례에 걸쳐 과제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각 과제의 협약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부 과제의 경우 과제 수행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데이터 수집 및 품질검증 기간이 불충분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은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구매·거래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 69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나, 수집대상 과제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공·등록한 실적이 없거나, 관련 데이터셋이 타 지역특화 플랫폼에 먼저 구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플랫폼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6. 재정제도 개선과제

첫째, 2024년 기준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당시 배분 비율과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변화 등으로 인해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기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2024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은 전체 계획현액 1조 401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정배분비율은 과거 복권발행기관별 복권판매액 등을 기반으로 설정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각 기금 및 회계의 재정 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상당 부분 변화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권수익금 배분의 합리성 및 복권기금 운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현행 법령 하에서 복권수익금 배분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분비율의 가감제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이며,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권기금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어 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44개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원 기준(300명) 미달을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 기준 미달 사유만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는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또는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석탄공사는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42년에 기금적립금 소진이 전망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었는바, 공공기관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지정 기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기관 중 재무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기관]

기관명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	
대한석탄공사	2023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상태 정부의 손실보전가능 조항 존재 및 금융부채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장기적으로 2042년에 기금 적립금의 소진 등이 추정됨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비율 급증(2018년 29% → 2023년 614.2%)	
부산항만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능조항	금융부채(억원): 2019년 19,025 → 2023년 36,334
인천항만공사		금융부채(억원): 2019년 9,174 → 2023년 14,4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및 이슈」, 2025.3.6

[첨부] 검토보고의 주요 분석내용(요약)

검토보고 총괄 편에는 결산 총평 4건, 재정총괄 검토 11건, 주제별 검토 11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부처별의 경우 총 60개 부처에 대하여 총 643건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총괄 보고서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결산 총평]	
경제적 성과	· 경제성장 및 고용 관점에서의 재정지출의 경제적 성과 검토
연례적 세수 오차 발생 및 대응	·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의 추계정확성, 세수결손 대응방안 검토 등
4대 중점투자 분야 분석	·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투자 분야 관련 사업 검토 등
재정정상화(지출 구조조정) 분석	·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및 내역 공개 필요성, 국가연구개발 예산 감액 및 보조사업 재정비에 대한 검토 등
[재정총괄 검토]	
재정수입	· 국세수입 결손 및 정부 대응방안 검토, 국세외수입 검토 등
재정지출	· 의무지출 증가 대응방안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검토 등
재정건전성	·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 및 적자성 채무 관리방안 마련 필요 등
기금 결산	·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현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검토 등
재무결산	· 재무제표 오류,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소개 등
예비비 결산	· 예비비 편성의 예측가능성, 시급성 검토 등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공공기관 결산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관리 문제, 수입 관리 문제, 경영 및 조직 관리 문제, 재정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련 문제, 성과 관리 문제, 제도 개선 과제, 수지차보전기관 관련 검토 등
국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환류	· 예산안 심의 결과 준수 필요,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 필요 등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	·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집행 관련 문제, 「총사업비 관리지침」 미준수 문제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집행 관련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관련 문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단위 및 범위 문제, 타당성 재조사 관련 문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문제 등
성과관리제도	· 성과목표관리 대상과 성과평가 대상의 불일치, 예산심사 대상과 성과목표관리 대상의 불일치 등
[주제별 결산 검토]	
국민건강보험 재정	· 건강보험 재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금화 등 국가재정 내 편입 검토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R&D)	·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논의 관련 검토 등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 당초 계획 대비 급격한 증가에 따른 ODA 총규모 재검토 및 국회 예산심의권 고려 필요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유형별 일자리 사업 검토 등
재난안전 대응	· 재난안전사업 대상 사전협의·평가 관련 개선사항 및 각 부처 재난안전사업 사업 검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분석
정책금융사업	·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지원 사업, 보증지원 사업, 펀드사업 검토 등
빈집 정비 사업	· 빈집 정비 주무부처 지정을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 및 책임성 확보 필요 등
정보화사업	· 전년도 예비검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관리 필요 등
국고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기한 내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필요 등
출연금 사업	·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출연예산 편성 필요 등

□ 부처별 보고서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일용임금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불용 최소화 필요 등 (1건)
대통령경호처	· 공무원 인건비 불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등 (2건)
국회	· 입법 및 정책개발 사업예산 집행률 제고 필요 등 (5건)
국가인권위원회	· 화상채팅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관리 미흡에 따른 예산 전액 불용 등 (3건)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지연손해금 이월액의 최소화 필요 등 (12건)
법제처	· 일반사업의 상용임금을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로 전용 주의 등 (4건)
감사원	· 감사활동의 성과에 보다 적합한 지표 설정 필요 등 (5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수행 부적정 등 (3건)
헌법재판소	· 조속한 대체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필요 등 (3건)
대법원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등 (12건)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률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등 (11건)
국가보훈부	· 보상금 사업에서 예산액의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이·전용 최소화 필요 등 (19건)
공정거래위원회	·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후 관련성 낮은 타부서 배치 부적정 (5건)
금융위원회	· 햇살론15 사업의 보증부실 및 금융권 출연 등을 고려한 햇살론 체계 개편 검토 필요 (16건)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예산 집행 부적정 등 (7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실적 부진 (4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국제기구 출연 시 국회 사전보고 등 절차마련 필요 등 (25건)
국세청	·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7건)
관세청	· AEO 공인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등 (5건)
조달청	· 비철금속 확충 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9건)
통계청	· 연례적 세목조정을 통한 통계데이터센터 확충 부적정 등 (5건)
[교육위원회]	
교육부	·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부적절 등 (17건)
국가교육위원회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이월 연례적 반복 등 (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일원화 필요 등 (23건)
방송통신위원회	· 벌금 및 과료, 과태료, 가산금 등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실적 지속 개선 필요 등 (6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등 (4건)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등 (10건)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의 추진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등 (12건)
통일부	· 국제사회 통일인식 조사 사업의 조사지역 및 표본규모 재검토 및 문헌조사 등 보완방안 모색 필요 등 (11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출석수당 지급 부적정 등 (3건)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홍보방안 모색 등을 통한 상담실적 제고 필요 등 (5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국방위원회]	
국방부	· 탄약 비군사화 적체물량 해소 필요 등(17건)
병무청	· 복무규정 위반자 전원에 대한 복무지도교육 실시 필요 등(4건)
방위사업청	· 보라매 개발 사업의 공동참여국 분담금 축소 등에 따른 사업관리 철저 필요 등(16건)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 사업의 세수결손 시 교부세 미교부 부적절 문제 등(20건)
경찰청	· 경찰직·일반직 공무원 간 과도한 비대칭 문제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방안 마련 필요 등 (10건)
소방청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현장 업무 근무자 참여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필요 (6건)
인사혁신처	· 재정사업 자율평가 운영 시 지출구조조정 계획의 적정 수립 필요 등(7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정선거지원단 사업의 성과수당 집행 개선 필요 등 (4건)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민간인 희생자 유전자 검사 사업의 지연 방지 필요 (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부적정 등 (22건)
국가유산청	· 전통재료 비축·공급 사업의 재료별 적정 비축량 및 공급 기준 마련 필요 등 (1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들의 예산집행 부진사유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등 (23건)
농촌진흥청	·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등 (9건)
산림청	·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 세입부족을 사유로 그 집행을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등 (10건)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펀드, 회수된 지원액 국고 반납 필요 등 (24건)
해양경찰청	· 불용예상액을 활용한 장비 구입 부적정 등 (6건)

구분	주요 분석 내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자본잠식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등 (26건)
특허청	· 장기 미납과태료의 철저한 수납관리 필요 등 (6건)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 중 임의적 사업내용 변경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후 변경·승인 부적정 (20건)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 예산 전용(증)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 지양 필요 등 (27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류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 (11건)
질병관리청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등 (13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R&D 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등 (20건)
기상청	·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등 (8건)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등 (26건)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주거급여 인상이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쪽방 등 임차료를 인상시키는 부작용 검토 필요 등 (27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결산잉여금 처리 방식 및 규정 보완 등 (5건)
새만금개발청	·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비 최소화 필요 등 (5건)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등 (8건)

【붙임 2】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총괄표

1. 연도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시 정 요 구(안)	22	27	20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는 없음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안) : 20 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합 계
건수	-	-	1	5	14	-	20

※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유형이 적용된 경우를 의미함(예 : 시정 및 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위원회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구 분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 회 운 영	-	-	-	-	-	-	-
법 제 사 법	-	-	-	-	-	-	-
정 무	-	-	-	-	2	-	2
기 획 재 정	-	-	-	-	1	-	1
교 육	-	-	-	-	2	-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1	1	3	-	5
외 교 통 일	-	-	-	-	-	-	-
국 방	-	-	-	-	-	-	-
행 정 안 전	-	-	-	-	-	-	-
문 화 체 육 관 광	-	-	-	1	1	-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	-	1	-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	-	-	-	-
보 건 복 지	-	-	-	3	3	-	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	-	-	-	-	-	-
국 토 교 통	-	-	-	-	1	-	1
성 평 등 가 족	-	-	-	-	-	-	-
공 통	-	-	-	-	-	-	-
합 계	-	-	1	5	14	-	20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부처별 시정요구(안)

현황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	-	-	-	-	-	-
	대통령경호처	-	-	-	-	-	-	-
	국회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
	소계	-	-	-	-	-	-	-
법제사법	법무부	-	-	-	-	-	-	-
	법제처	-	-	-	-	-	-	-
	감사원	-	-	-	-	-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	-	-	-
	헌법재판소	-	-	-	-	-	-	-
	대법원	-	-	-	-	-	-	-
	소계	-	-	-	-	-	-	-
정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	-	1	-	1
	국가보훈부	-	-	-	-	1	-	1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금융위원회	-	-	-	-	-	-	-
	국민권익위원회	-	-	-	-	-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	-
	소계	-	-	-	-	2	-	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	-	-	-	1	-	1
	국가데이터처	-	-	-	-	-	-	-
	국세청	-	-	-	-	-	-	-
	관세청	-	-	-	-	-	-	-
	조달청	-	-	-	-	-	-	-
	소계	-	-	-	-	1	-	1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교육	교육부	-	-	-	-	2	-	2
	국가교육위원회	-	-	-	-	-	-	-
	소 계	-	-	-	-	2	-	2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	1	-	-	2
	우주항공청	-	-	-	-	3	-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	-	-
	소 계	-	-	1	1	3	-	5
외교통일	외교부	-	-	-	-	-	-	-
	통일부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	-
	재외동포청	-	-	-	-	-	-	-
	소 계	-	-	-	-	-	-	-
국방	국방부	-	-	-	-	-	-	-
	병무청	-	-	-	-	-	-	-
	방위사업청	-	-	-	-	-	-	-
	소 계	-	-	-	-	-	-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	-	-	-	-	-	-
	인사혁신처	-	-	-	-	-	-	-
	경찰청	-	-	-	-	-	-	-
	소방청	-	-	-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	-	-	-	-	-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	-	-	-	-
	소 계	-	-	-	-	-	-	-

(단위: 건)

위원회	부처명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중복)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	-	-	1	1	-	2
	국가유산청	-	-	-	-	-	-	-
	소 계	-	-	-	1	1	-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	-	-	1	-	1
	농촌진흥청	-	-	-	-	-	-	-
	산림청	-	-	-	-	-	-	-
	해양수산부	-	-	-	-	-	-	-
	해양경찰청	-	-	-	-	-	-	-
	소 계	-	-	-	-	1	-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	-	-	-	-	-
	지식재산청	-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	-
	소 계	-	-	-	-	-	-	-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	-	-	3	3	-	6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	-	-
	질병관리청	-	-	-	-	-	-	-
	소 계	-	-	-	3	3	-	6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기상청	-	-	-	-	-	-	-
	고용노동부	-	-	-	-	-	-	-
	소 계	-	-	-	-	-	-	-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	-	-	-	1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
	새만금개발청	-	-	-	-	-	-	-
	소 계	-	-	-	-	1	-	1
성평등가족	성평등가족부	-	-	-	-	-	-	-
	소 계	-	-	-	-	-	-	-
공 통		-	-	-	-	-	-	-
합 계		-	-	1	5	14	-	20

【붙임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 정 요 구(안)

2025. 11.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국회운영위원회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해당사항 없음)
2. 대통령경호처(해당사항 없음)
3. 국회(해당사항 없음)
4. 국가인권위원회(해당사항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법무부(해당사항 없음)
2. 법제처(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해당사항 없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해당사항 없음)
5. 헌법재판소(해당사항 없음)
6. 대법원(해당사항 없음)

정무위원회

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7032-305)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지적사항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는 자체 생산 콘텐츠가 거의 없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다른 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수집해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정보제공 역할이 크지 아니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용 등은 국무조정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무조정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해 볼 것		

2. 국가보훈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전공의 의료공백에 따른 보훈병원 운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훈병원 진료(2150-365)	제도개선	국가보훈부
		지적사항	○ 의정갈등으로 인해 보훈병원 전공의 인력이 2023년 130명에서 2024년 17명으로 급감하면서 보훈병원 진료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문의 당직 전환과 대체 인력 채용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두 차례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그 이후 전공의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재정 소요를 각 보훈병원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의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장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가보훈부는 전공의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 공정거래위원회(해당사항 없음)

4. 금융위원회(해당사항 없음)

5. 국민권익위원회(해당사항 없음)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사항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1. 기획재정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상세한 명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회계 예비비(3069-300)			제도개선	기획재정부																																			
		지적사항	○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절성과 집행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결산서에 목적예비비(2024년 2조 2,000억원)와 일반예비비(2024년 2조원)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가안전보장활동 관련 내역 외에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명시 필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목</th> <th>세목</th> <th>세사업</th> <th>금액(백만원)</th> <th>예비비배정사유</th> </tr> </thead> <tbody> <tr> <td>710</td> <td>01</td> <td>정부예비비</td> <td>355,000</td> <td>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td> </tr> <tr> <td>710</td> <td>01</td> <td>정부예비비</td> <td>142,000</td> <td>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td> </tr> <tr> <td>710</td> <td>01</td> <td>정부예비비</td> <td>106,500</td> <td>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td> </tr> <tr> <td>710</td> <td>01</td> <td>정부예비비</td> <td>106,500</td> <td>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td> </tr> <tr> <td>710</td> <td>01</td> <td>정부예비비</td> <td>511</td> <td>국제투자협력단 운영</td> </tr> <tr> <td colspan="3">합계</td> <td>710,511</td> <td></td> </tr> </tbody> </table>					목	세목	세사업	금액(백만원)	예비비배정사유	710	01	정부예비비	355,000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710	01	정부예비비	142,000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710	01	정부예비비	511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합계			710,511	
		목	세목	세사업	금액(백만원)			예비비배정사유																																		
710	01	정부예비비	355,000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710	01	정부예비비	142,000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글로벌 원자재 긴급 확보																																						
710	01	정부예비비	106,500	사이버 안보 대응 경비																																						
710	01	정부예비비	511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합계			710,511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및 집행가능성 등 예비비 사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하며, 결산서에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구분하여 해당 예비비 집행 내역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내역 외에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당해연도 예비비 사용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할 것																																									

2. 국가데이터처(해당사항 없음)

3. 국세청(해당사항 없음)

4. 관세청(해당사항 없음)

5. 조달청(해당사항 없음)

교육위원회

1. 교육부(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1640-404)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법령에 따른 경직성 경비로 사전에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야 함에도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2022년) 179억원 전용, (2023년) 311억 6,800만원 전용, 29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2024년) 212억 9,400만원 전용, 332억 5,400만원 예비비 편성 -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이 늦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예산 편성 시 적정 국고보조를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대상 인원 및 단가 산출에 주의를 다하는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영유아보육료의 연례적 예비비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유아보육료 지원(1633-331)	제도개선	교육부
		지적사항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시 대비 실제 지원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함 - 예비비 편성액은 2023년도(지원대상 4만 9,000명 초과) 1,383억원, 2024년도(지원대상 3만 9,000명 초과) 1,770억원임 ○ 예비비는 당해연도 부족분뿐 아니라 전년도 미지급금 총당에도 사용되었으나, 2024년 예비비 요구서에는 당해연도 부족분만 기재해 사유·금액·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2023년도 미지급금은 1,703억원(2024년 예산으로 상계), 2024년도 미지급금은 774억원임		
		시정요구사항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대상인원 추계 방법 현실화 등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향후 동 사업에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예비비 요구 시에도 실제 총당 내역을 반영한 산출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작성·제출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해당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기존 예산 편성과 달라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국회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2602-339)	시정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도 예산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아 예비비로 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비용 2억 6,700만원은 동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아 ‘목적 외 사용’ 의 문제가 있음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사업에서 각출하여 집행하였는데 국회에 제출한 결산설명자료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감독권에 부합하지 않음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으로 집행된 사업 내역 <table><tr><th>사업명(사업코드)</th><th>회계·기금</th><th>출범식 집행액 (백만원)</th></tr><tr><td>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td><td>일반회계</td><td>111</td></tr><tr><td>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2032-304)</td><td>방송통신발전기금</td><td>56</td></tr><tr><td>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2033-304)</td><td>정보통신진흥기금</td><td>50</td></tr><tr><td>디지털질서 기반구축 및 글로벌 질서확산 지원(2033-371)</td><td>일반회계</td><td>50</td></tr></table>			사업명(사업코드)	회계·기금	출범식 집행액 (백만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	일반회계	111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2032-304)	방송통신발전기금	56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2033-304)	정보통신진흥기금	50	디지털질서 기반구축 및 글로벌 질서확산 지원(2033-371)	일반회계	50
		사업명(사업코드)	회계·기금			출범식 집행액 (백만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2131-305)	일반회계	111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2032-304)	방송통신발전기금	56																		
디지털트윈경쟁력강화(2033-304)	정보통신진흥기금	50																		
디지털질서 기반구축 및 글로벌 질서확산 지원(2033-371)	일반회계	50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기존 예산안과 다르게 집행한 모든 예산은 철저하게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예비비 배정·집행 시 법령상 절차 준수 및 사업목적 외 예산 전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디지털 질서기반 구축 및 글로벌확산 지원(2033-371)	주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예비비 신청 및 배정 이전에 추진하여 「국가재정법」 제51조의 예비비 사용 관련 규정과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예비비 부족을 이유로 ‘초거대AI 생태계 확산 지원’ 사업의 예산(5.88억원)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없이 동 사업의 행사비로 사용하여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시 법령상 절차 준수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우주항공청(3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및 이월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7118-251)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에 일반용역비를 예비비로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억 2,000만원(63.8%)를 전용하였고, 정책연구비(260-02목)로 전용한 9,000만원은 “우주항공진흥 기금 설치 방안 연구용역”에 배정되었으나,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액 이월되었음 -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7,700만원 중 4억 6,100만원(52.6%)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은 예비비 전용 및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불필요한 전용·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예비비에 대한 집행관리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우주항공 정보화(7123-250)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우주항공청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예비비 편성 단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이 되어 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이월했다는 문제가 있음 - “우주항공 정보화”는 예비비로 편성된 4억 1,500만원 중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1억 4,300만원, 우주항공청 대표 누리집 1억 6,200만원 등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예비비 편성 시 계획했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연말에 계약하여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비비 편성 사업은 사전 준비 후 신속히 집행하고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협약 체결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지적사항	○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4호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연구개발협약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2024년에 6건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를 위반하였음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중 정책연구에 해당하는 과제 현황 <table><tr><td>분류</td><td>연구개발 주제명</td><td>주관연구 개발기관</td><td>연구기간</td><td>연구비(백만원)</td></tr><tr><td>기획</td><td>항공혁신 R&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td><td>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연구소</td><td>2024-10-01~ 2025-09-30(12개월)</td><td>500</td></tr><tr><td>정책</td><td>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td><td>인터젠컨설팅(주)</td><td>2024-10-01~ 2025-09-30(12개월)</td><td>200</td></tr><tr><td>정책</td><td>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평가운영을 통한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방안 마련</td><td>한국연구재단</td><td>2024-09-19~ 2024-12-06(3개월)</td><td>50</td></tr><tr><td>정책</td><td>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 (정책, 산업육성, 기술개발 분야)</td><td>한국항공우주연구원</td><td>2024-10-01~ 2025-07-31(10개월)</td><td>1,100</td></tr><tr><td>정책</td><td>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I (인재양성, 우주과학, 우주위협 분야)</td><td>한국천문연구원</td><td>2024-10-01~ 2025-07-31(10개월)</td><td>700</td></tr><tr><td>정책</td><td>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td><td>과학기술정책연구원</td><td>2024-10-01~ 2025-07-31(10개월)</td><td>200</td></tr></table>						분류	연구개발 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기획	항공혁신 R&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	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연구소	2024-10-01~ 2025-09-30(12개월)	500	정책	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	인터젠컨설팅(주)	2024-10-01~ 2025-09-30(12개월)	200	정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평가운영을 통한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한국연구재단	2024-09-19~ 2024-12-06(3개월)	50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 (정책, 산업육성, 기술개발 분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1,100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I (인재양성, 우주과학, 우주위협 분야)	한국천문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700	정책	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200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분류	연구개발 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기획	항공혁신 R&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	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연구소	2024-10-01~ 2025-09-30(12개월)	500																																									
정책	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	인터젠컨설팅(주)	2024-10-01~ 2025-09-30(12개월)	200																																									
정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평가운영을 통한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한국연구재단	2024-09-19~ 2024-12-06(3개월)	50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 (정책, 산업육성, 기술개발 분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1,100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I (인재양성, 우주과학, 우주위협 분야)	한국천문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700																																									
정책	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200																																									
시정요구사항	○ 우주항공청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였는데, 향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관리·수행하도록 개선할 것				제도개선	우주항공청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해당사항 없음)

4. 원자력안전위원회(해당사항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1. 외교부(해당사항 없음)
2. 통일부(해당사항 없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해당사항 없음)
4. 재외동포청(해당사항 없음)

국방위원회

1. 국방부(해당사항 없음)
2. 병무청(해당사항 없음)
3. 방위사업청(해당사항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행정안전부(해당사항 없음)
2. 경찰청(해당사항 없음)
3. 소방청(해당사항 없음)
4. 인사혁신처(해당사항 없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7.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해당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문화체육관광부(2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 이월 및 불용 규모 과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2133-302)	제도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중 청와대재단에 교부하는 민간위탁사업의 예산은 295억 2,700만원이고, 이 중 40억 9,500만원이 이월, 5억 7,500만원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확한 예산 편성과 예비비 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전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		
2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미디어 홍보(3131-302)	주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적사항	○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전용·조정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증액이 이뤄지는바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용 및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해외순방 현지 프레스센터 지원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미디어 센터 조성 운영 경비를 동 사업 예산으로 집행한바 사업계획 수립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순방 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국가유산청(해당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예비비 배정절차 준수 및 사업효과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식품소비기반조성(3041-385)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에 사업비를 보전 받는 형태로 예비비가 배정되어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배정 절차를 위반하였고, 농산물 품권 가맹점 및 결제액의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나타남		
		시정요구(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배정 절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효과가 전 유통채널 및 전 지역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가맹점 수 확충·지역별 접근성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농촌진흥청(해당사항 없음)

3. 산림청(해당사항 없음)

4. 해양수산부(해당사항 없음)

5. 해양경찰청(해당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산업통상부(해당사항 없음)
2. 지식재산처(해당사항 없음)
3. 중소벤처기업부(해당사항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보건복지부(6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국가재정 투입 관련 재발 방지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이용 1,986억 9,600만원 및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으로 마련된 예산현액 3,877억 6,200만원 중 3,81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4년 의료공백 사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이에 대응한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생명과 직결된 국민 피해와 수천억원 대의 예산 낭비를 유발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의료공백 사태와 같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국민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재원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면밀한 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 중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 은 전공의 이탈에 따라 진료공백이 발생한 의료현장에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게 파견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113억 1,800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이·전용으로 197억 7,200만원을 확보하는 등 310억 9,000만원의 예산현액을 마련하였으나, 이 중 41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한 예비비 배정 및 이·전용 시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할 것		
3	파견 공중보건의사 특별활동지원금 의 기본급여중복 및 과다지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수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는 파견기간 동안 원소속기관의 업무를 볼 수 없음에도 1일 8시간의 기본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일 20만원의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면서(월 20일 근무 시 400만원) 동시에 본부 인건비를 통해 기본급여(월 200만원 내외)를 지급한 것은 기본근무에 대하여 보수가 중복으로 지급된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특별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여와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배정된 예비비의 전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는 소요 예산을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감)하였다가, 이후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이용(증)하는 등 예산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배정받은 예비비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5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4333-45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의료개혁과제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는 국회의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로서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운영해야 할 예비비의 제도 취지에 반함 ○ 또한 2024년 의대정원 증원 및 전공의 집단이탈 등이 발생하기 전 의료개혁을 위한 별도의 논의와 정부정책 발표가 있었고, 의료계와의 간담회 등은 기존 조직과 인력으로도 수행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의적인 조직 신설과 예산집행이 아닐 수 없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홍보에 대한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기반 구축(7033-304)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책홍보와 가짜뉴스 대응의 시급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의사 집단행동 발생으로 예비비 90억원을 의료개혁 홍보에 지출한 것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의료개혁정책 홍보에 예비비를 우선 사용한 것은 이를 승인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하여 반성하고, 향후 예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해당사항 없음)

3. 질병관리청(해당사항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기후에너지환경부(해당사항 없음)
2. 기상청(해당사항 없음)
3. 고용노동부(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부(1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K-패스 사업 관련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지역 차별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4931-354)	제도개선	국토교통부
		지적사항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은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 교통비 부담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출액의 20~53.3%를 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를 통해 환급해주는 사업임 ○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K-패스 미참여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월 15회 이상 이용 조건이 지방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참여 장벽으로 작용함 ○ 환급 예산 부족으로 400억원 규모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매칭 지방비 부족으로 환급액 감액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및 환급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이·전용 및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미지원 지역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해당사항 없음)

3. 새만금개발청(해당사항 없음)

성평등가족위원회

1. 성평등가족부(해당사항 없음)